

의안번호	제 5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335 회)

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10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

의안 번호	54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상위법인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과 관련 충청북도의 주요 교통 정책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기능(안 제3조) : 안전의 심의
 - 제2종·제3종 교통물류거점, 광역·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 사항
 -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,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항
- 위원회 구성(안 제4조)
 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구성하되, 성별 균형을 고려
 -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됨
- 위원회 운영(안 제8조)
 -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됨
 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교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2종·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광역복합환승센터(건축연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)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(광역·일반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)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
4. 충청북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5.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
6.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)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교통관련 유관기관의 전문가

3.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9조(해촉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해당 업체의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2.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3.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11조(관계인 의견청취 등 협조요청)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
제13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

제110조(지방교통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

제113조(지방교통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"지방교통위원회"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·도의 국장이 된다.

③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교통안전법

제13조(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)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"지방교통위원회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②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(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) ① 시·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·군·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(이하 "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시·도지사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 <개정 2012.6.1>

④시·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「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원회 안전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위원회 안전 심의를 위한 서면검토,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, 여비 등 실비 지급 수요 발생

3. 관련조문 : 안 제3조(기능), 제8조(위원회 운영), 제13조(수당 및 여비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심의안전 규모는 연간 2회 정도 예상. 위원 30명 중 당연직 2명(위원장, 부위원장)을 제외하고 28명 전원 안전 참여기준으로 1명당 120천원(안전검토 50천원, 회의참석 70천원) 소요 예상

※ 120천원(1명)×28명×2회/년=6,720천원/년

나. 추계 결과 : '14년부터 향후 5년간 총 30,240천원 정도 소요 예상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(정책기획관실 위원회 운영수당을 활용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장 이태훈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4년)	2차년도 (2015년)	3차년도 (2016년)	4차년도 (2017년)	5차년도 (2018년)	계
세 입	-	-	-	-	-	-
-	-	-	-	-	-	-
세 출	3,360	6,720	6,720	6,720	6,720	30,240
위원회 운영수당	3,360	6,720	6,720	6,720	6,720	30,240
재원 조달	3,360	6,720	6,720	6,720	6,720	30,24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3,360	6,720	6,720	6,720	30,240
	지방세	3,360	6,720	6,720	6,720	30,240
	세외수입	0	0	0	0	0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